자동차보험의 유형별 보상사례

김 희 중
〈한국자동차보험(주) 지점장〉

1.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생기는 금전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합 보험 대인 배상 보험에 가입하지만, 반대로 본인이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거나,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리 나라의 등록 차량중 종합보험 대인 배상(공제 계약 포함)에 가입하고 있는 차량의 비율은 약 80% 정도이다. 나머지 20%는 책임 보험(강제 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으므로,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사고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2.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의 성격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은 예컨대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상대방 차량에게 과실은 있으나 그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즉 무보험 자동차인 경우에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합 보험 대인 배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보험이다. 즉, 피보험자(피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종합 보험 대인 배상이 자기를 위한 상해 보험으로 전환되어, 보험회사는 무보험 자동차의 소유자인 가해자를 대신하여 손해 배상액을 피보험자(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 실손 보상 보험(実損補償保險)

보험 가입자가 교통 재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의 자손 보험, 상해 보험, 생명 보험이 이용된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도 보험 가입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위의 보험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위의 보험들은 부상 치료비의 보상 한도가 극히 낮아 보상 금액이 실제 치료비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고, 사망이나 후유 장해 보험금도 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보상 내용이 실제 손해를 커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 가입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을 근거로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다른 상해 보험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이 보험의 효용성을 높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보험은 그 보상 한도가 1억원으로 되어 있고, 소송 판결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 점에서 일반 종합 보험의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

나. 구상권 행사 협조 의무

이 보험에서 보험 가입자인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무보험 자동차의 소유자인 가해자를 대신하여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험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급한 보험금 범위내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되므로 보험 가입자는 지급받은 보험금 범위 내에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경우, 절차상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요컨대,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은 가해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에도 보험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신의 실제 손해를 1억원

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써 자동차 보험 제도의 담보 범위를 확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이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 및 보상 범위의 개요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사례 I〉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이 새벽에 집 부근에 있는 약수터에 가기 위해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종합 보험 미가입)에 충격되어 부상하였다. 이 경우 피해자는 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① 기명 피보험자(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②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로서·기명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는 이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기명 피보험자 본인은 피보험 차량에 탑승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행중의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이 보험에 가입한 기명 피보험자 본인이 도로 횡단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종합 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례 II〉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심야에 한적한 국도상에서 뒤따라 오던 번호 불상의 화물 트럭에 충격되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 본인도 중상을 입었는데 그 화물 트럭은 도주하였다. 이 경우에도 이 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가?

이 보험에서 무보험 차량이라 함은 가해 차량이 ① 종합 보험 대인 배상 보험(공제 계약포함)에 가입하고 있지 않거나 ② 가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 등으로 종합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든지 ③ 가해 차량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즉 뺑소니 차량인 경우 등을 말한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가해 차량이 도주한 경우에도 피보험자는 이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례 III〉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동승시키고 운전하던중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종합 보험 미가입)에 충격되어 배우자와 자녀가 부상하였는데, 치료비가 각각 6,000만원·5,000만원이 소요되었다. 이 경우 보상 내용은?

이 경우 가해 승용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책임 보험 한도까지는 가해 승용차의 책임 보험(최고 한도 부상 3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 보험에 의하여 실제 치료비의 합계 1억 1천만원(실제로는 이 금액에서 가해 차량의 책임 보험에 의한 보험금 및 피보험 차량의 자손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 및 치료후 후유 장해가 있다면 종합 보험 대인 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도 피해자 각각에게 1억원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다.

〈사례 IV〉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피보험자가 면허 정지 기간 중 급한 용무로 운전하던 중, 책임 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종합 보험 미가입)과 충돌하여 부상하였다. 이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무면허·음주·유상 운송 등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와 같이 면허 정지 기간 중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므로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에 의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다만,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사고 경위에 따라 상대방 차량의 책임 보험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